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9차 법제사법위원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사실증명 발급·열람 제한〉

- 유상범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686호)
- 유상범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702호)

2024. 12.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5
1. 2개 개정안의 내용	5
2. 현행법의 내용 및 헌법재판소 결정례	10
3. 개정안에 대한 검토	13

I. 제안경위

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발 의 자: 유상범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2024. 9. 5.

다. 회 부 일: 2024. 9. 6.

2.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발 의 자: 유상범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2024. 9. 5.

다. 회 부 일: 2024. 9. 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이 법에 따른 재외동포의 국내거소신고에 대한 사실증명 발급신청 근거를 규정하면서 가정폭력사건 관계자의 정보 접근에 대한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가정폭력행위자가 현행법의 공백을 악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실증명 발급을 신청하더라도 거부할 근거가 없는 상황임.

2020년 8월 28일 헌법재판소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4963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제1항이 가정폭력가

해자에 대한 별도의 제한 없이 직계혈족이기만 하면 사실상 자유롭게 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여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가정폭력가해자에게 무단으로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이유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림.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피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입법을 추진하였으나, 2021년 12월 28일 「주민등록법」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그침으로써 현행법의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 정보에 대한 위헌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임.

이에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가정폭력행위자를 지정하여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그의 미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 및 열람 제한이나 그 제한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의 발급·열람 제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폭력행위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그의 미성년인 직계비속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가정폭력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5항 및 제7조의2 신설).

2.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이 법의 절차에 따라 출·입국한 기록 등에 대한 사실증명 발급신청 근거를 규정하면서 가정폭력사건 관계자의 정보 접근에 대한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가정폭력행위자가 현행법의 공백을 악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실증명 발급을 신청하더라도 거부할 근거가 없는 상황임.

2020년 8월 28일 헌법재판소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4963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제1항이 가정폭력가해자에 대한 별도의 제한 없이 직계혈족이기만 하면 사실상 자유롭게 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여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가정폭력가해자에게 무단으로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피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입법을 추진하였으나, 2021년 12월 28일 「주민등록법」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그침으로써 현행법의 출입국 정보 및 외국인등록 정보에 대한 위헌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임.

이에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가정폭력행위자를 지정하여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그의 미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

실증명의 발급 및 열람 제한이나 그 제한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의 발급·열람 제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폭력행위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그의 미성년인 직계비속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을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가정폭력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88조제1항 및 제3항·제4항·제5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2개 개정안의 내용

2개의 개정안은 모두 가정폭력행위자가 가정폭력피해자 등의 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려는 취지인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가정폭력피해자 등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가정폭력피해자 등의 출입국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발급·열람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 이를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가정폭력피해자 등이 가정폭력행위자를 지정하여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가정폭력피해자 등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열람 제한과 그 제한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은 가정폭력행위자의 사실증명 발급·열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사유를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함(안 제7조 및 제7조의2).

현행	개정안
제7조(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 ① ~ ④ (생략) ⑤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은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 <u>자에게는</u>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⑥ ~ ⑨ (생략) <u><신설></u>	제7조(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u>사람 및 그의 법정대리인 그 밖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u> ----- ----- ----- -----. ⑥ ~ ⑨ (현행과 같음) <u>제7조의2(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발급·열람의 제한) 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이하 “가정폭력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대리인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이하 “가정폭력행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그의 미성년인 직계비속의 제7조제5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 및 열람을 제한하거나 그 제한을 해지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u>

	②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 및 열람 제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은 제7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행위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가정폭력 피해자 또는 그의 미성년인 직계비속의 같은 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열람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발급·열람 제한 및 해지 신청 절차, 제출 서류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

(2)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가정폭력피해자 등이 가정폭력행위자를 지정하여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가정폭력피해자 등의 출입국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발급·열람 제한과 그 제한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 재외공관의 장은 가정폭

력행위자의 사실증명 발급·열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사유를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함(안 제7조 및 제7조의2).

현행	개정안
제88조(사실증명의 발급 및 열람) 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시·군·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읍·면·동 또는 재외공관의 장은 이 법의 절차에 따라 출국 또는 입국한 사실 유무에 대하여 <u>법무부령</u>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출국 또는 입국한 사실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 법의 절차에 따른 출국 또는 입국 사실이 없다는 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제88조(사실증명의 발급 및 열람) ① ----- ----- ----- ----- ----- <u>본인 및 그의 법정대리인 그 밖</u> <u>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u> <u>게 법무부령</u> -----. ----- ----- ----- ----- -----.
② (생략) <u><신설></u>	② (현행과 같음) ③ 「 <u>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u> <u>관한 특례법</u> 」 제2조제5호에 따 른 피해자(이하 “가정폭력피해자” 라 한다) 또는 그 대리인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 (이하 “가정폭력행위자”라 한다) 를 지정하여 지방출입국·외국인 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발

<신 설>

1.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그의 미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의 제1항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발급

2.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그의 미성년인 직계비속의 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발급 및 열람

④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제3항에 따른 사실증명의 발급·열람 제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시·군·구 및 읍·면·동의 장 또는 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행위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제3항 각 호의 발급을 하지 아니하거나 열람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발급
· 열람 제한 및 해지 신청 절차,
제출 서류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2. 현행법의 내용 및 헌법재판소 결정례

(1) 현행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이 규정하는 국내거소신고는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에의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지위를 보장하고 각종 편의 제공 및 효과적인 체류관리 등을 위해 도입한 제도임.¹⁾

재외동포 체류자격(F-4) 소지자가 국내거소신고를 할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 취업활동이 허용되고, 법령상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 등이 필요할 경우 국내거소신고증이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그에 갈음할 수 있음.²⁾

「재외동포법」 제7조에 따르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에게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하고,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하는데, 이에 더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은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 자에게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거소신고 사실증

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국내거소신고) ①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이 법을 적용받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한민국 안에 거소(居所)를 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국내거소를 이전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거소(新居所)가 소재한 시·군·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조에서 같다) 또는 읍·면·동의 장이나 신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거소이전 신고를 받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신거소가 소재한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은 신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각각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내거소신고서의 기재 사항, 첨부 서류, 그 밖에 신고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9조(주민등록 등과의 관계) 내지 제16조(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보훈급여금)의 규정내용

명을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음.³⁾

[참고 : 연도별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 현황]

(단위: 명)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거소신고자 수	411,337	441,107	459,996	464,783	475,945	499,270	533,295

* 자료: 법무부, 공공데이터포털

(2)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시·군·구(자치구가 아닌 구 포함) 및 읍·면·동 또는 재외공관의 장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발급할 수 있음.⁴⁾⁵⁾

-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 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에게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하고,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한다.
 ② ~ ④(중 략)
 ⑤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은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 자에게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재발급 및 제5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⑦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은 외국국적동포에게 추가로 국내거소신고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국내거소신고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할 수 있다.
 ⑧ 법무부장관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 「출입국관리법」 제33조제7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⑨ 제7항에 따른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규격, 유효기간, 효력 말소 등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4)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과 달리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발급할 수 있는 주체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에 한정됨.

「출입국관리법」 제88조(사실증명의 발급 및 열람) 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시·군·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읍·면·동 또는 재외공관의 장은 이 법의 절차에 따라 출국 또는 입국한 사실 유무에 대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출국 또는 입국한 사실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특히 필요

(3) 위와 같은 「재외동포법」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사실증명의 발급과 관련하여, 현행 규정들은 가정폭력행위자가 가정폭력피해자들의 정보에 접근함에 있어 별도의 제한은 하지 않아, 가정폭력행위자라 하더라도 가정폭력피해자의 국내거소신고, 출입국 및 외국인등록에 관한 사실증명을 발급·열람할 수 있는 상황임.

반면, 현행 「주민등록법」은 가정폭력피해자가 가정폭력행위자를 지정하여 시·군·구청장에게 가정폭력피해자들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⁶⁾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 법의 절차에 따른 출국 또는 입국 사실이 없다는 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은 이 법의 절차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 및 그의 법정대리인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5)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국내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으로 하여금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출입국관리법」 제31조(외국인등록) ①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한외국공관(대사관과 영사관을 포함한다)과 국제기구의 직원 및 그의 가족
 2.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따라 외교관 또는 영사와 유사한 특권 및 면제를 누리는 사람과 그의 가족
 3. 대한민국정부가 초청한 사람 등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② ~ ⑤ (생략)

6) 「주민등록법」 제29조(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① ~ ⑤ (생략)

⑥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가 본인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상자를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가정폭력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⑦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기관의 장은 제6항의 제한신청이 있는 경우 그 제한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제한대상자”라 한다)에게 가정폭력피해자등의 주민등록표 열람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등·초본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제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⑧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기관의 장은 제2항제6호에도 불구하고 제한대상자가 가정폭력피해자등의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교부하지 아니하는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제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⑩, ⑪ (생략)

또한, 헌법재판소는 2020. 8. 2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에 「주민등록법」과 같이 가정폭력피해자가 가정폭력가해자를 지정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의 교부를 제한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부진정입법부작위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음.⁷⁾ 이에 2021. 12. 28. 「가족관계등록법」이 개정되어 가정폭력피해자들은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지정하여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제한하거나 그 제한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을 받은 시·읍·면의 장은 이를 교부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음.⁸⁾

3. 개정안에 대한 검토

○ 개정안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⁹⁾

7) [전원재판부 2018헌마927, 2020. 8. 28., 헌법불합치]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별도의 제한 없이 직계혈족이기만 하면 사실상 자유롭게 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여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인 청구인의 개인정보가 가정폭력 가해자인 전 배우자에게 무단으로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따라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증명서의 교부 등) ① ~ ⑦ (생략)

⑧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이하 “가정폭력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대리인은 가정폭력피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지정(이하 “교부제한대상자”라 한다)하여 시·읍·면의 장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제한하거나 그 제한을 해지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⑨ 시·읍·면의 장은 제8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제한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⑩ 제9항에 따른 교부제한대상자에게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의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을 열람하게 하지 아니한다.

⑪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신청·해지 절차, 제출 서류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9)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 3. (생략)

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가 지정한 가정폭력행위자의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그의 미성년인 직계비속의 국내거소신고, 출입국 사실, 외국인등록에 관한 사실증명의 발급·열람을 제한함으로써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및 그 자녀의 국내 거주 주소, 출입국 기록, 외국인등록 여부 등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이들에게 추가적으로 가해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함.

○ 다만, 현행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과 「출입국관리법」은 출입국 사실, 외국인등록 및 국내거소신고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열람 업무의 주체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으로 규정(출입국 사실의 경우 “재외공관의 장”도 발급·열람 업무 가능)하고 있음.¹⁰⁾

개정안은 가정폭력행위자의 요청에 의한 사실증명의 발급·열람 제한의 신청을 받는 주체로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을 규정하고 있는바, 가정폭력행위자의 요청에 의한 사실증명의 발급·열람 제한을 지

4. “가정폭력행위자”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말한다.

5. “피해자”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6. ~ 8. (생략)

10)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 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에게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하고,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한다.

「출입국관리법」 제88조(사실증명의 발급 및 열람) 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시·군·구 (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읍·면·동 또는 재외공관의 장은 이 법의 절차에 따라 출국 또는 입국한 사실 유무에 대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출국 또는 입국한 사실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 법의 절차에 따른 출국 또는 입국 사실이 없다는 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은 이 법의 절차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및 그의 법정대리인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청할 경우, 그 제한의 주체는 발급·열람 업무 담당 주체인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 재외공관의 장이 된다는 점에서, 사실증명 발급·열람 제한 신청 대상 관서장과 발급·열람의 실제 제한 주체에 차이가 발생함.¹¹⁾

그에 따라, 예를 들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출입국 사실증명의 열람 제한을 신청하였음에도 재외공관의 장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개정안의 실효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열람 제한 신청에 따라 정보 교부 제한 업무가 제대로 처리될 수 있는지 현실적인 이행 가능성을 점검하고, 동시에 자동적으로 정보교부 제한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053

11) □ 유사입법례

- 「가족관계등록법」 : 교부 제한 신청대상 및 교부 제한 주체가 시·읍·면의 장으로 동일
- 「주민등록법」
 - 열람·교부 제한의 신청 대상 : 시·군·구청장
 - 열람·교부 제한의 주체 : 시·군·구청장 또는 하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읍·면·동의 장 등(“열람 또는 등초본교부기관의 장”)